

---

# **한·EU FTA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11. 5.**

**관계부처합동**

- 
- 
- ◇ 동 자료는 우리 국회의 한·EU FTA 비준동의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 한·EU FTA에 대해 보다 전반적이며 상세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에 게재된 “한·EU FTA 상세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목 차

## I. 총론

1. 무역위원회의 권한 .....	1
2. 잠정발효 목표일시의 입법권 제한 여부 .....	5
3. 협정 폐기 관련 조항 .....	7
4. 관세 및 세입에의 영향 .....	9
5. 중개(mediation) 절차 .....	11

## II. 상품/SPS/무역구제

1. 유럽산 쇠고기 검역 .....	12
2. 농산물 양허 관련 WTO와의 관계 .....	15
3. TRQ 관련 사항 .....	17
4. 냉동 삼겹살에 대한 ASG 적용 문제 .....	18
5. 농산물 수출제한 조항 .....	21
6. 반덤핑 규정 .....	23
7. 관세 철폐 일정(무관세 비율) .....	25

### III. 비관세

1. 전기·전자 제품 인증 문제	28
2. 자동차 안전 기준	30
3.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33
4.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34
5. 유럽의 REACH(화학물질 규제) 문제	36
6. 자동차 관련 무역제한 조치	37

### IV. 원산지

1. 어묵/게맛살 원산지 기준	38
2.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치패, 치어)	40
3. 관세환급 규정/EU측 이행법안	42
4. 인증수출자 제도	46

### V. 서비스

1. SSM	49
2. 보험서비스 후선업무 이용/특별법 상 최혜국대우 적용	55
3. 신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	57
4. 금융 세이프가드	58

5.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 심사	61
6. 우편 서비스[우편법 관련 조항]	62
7.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관련	65
8. 서비스 양허표의 자기집행력	66

## **VI. 지재권**

1. 방송사업자의 권리	67
2. 지재권 국경조치	68
3. 지재권 형사집행	69
4. 저작권 보호기간/허가-특허 연계	72
5. 지리적 표시	74

## **VII. 정부조달/경쟁**

1. 서울, 인천, 경기 건설 활성화 조례	78
2. 친환경 학교 급식	80
3. 보조금 산업 정책	81

# I. 총론

# 1. 무역위원회의 권한

## (오해 내용)

-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국회가 구속된다는 것은 한국 헌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함."
- "무역위원회의 관장범위가 무제한적인 바,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이 미치며, '어떠한 사안'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양국이 제기할 수 있음."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기구로서, 무역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EU FTA의 무역위원회와 같은 협정 이행기구는 대부분의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며, 양자조약의 경우는 대개 '공동위원회'의 형태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당사국 총회'의 형태로 규정
- 한-EU FTA는 무역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5.1조 제3항 및 제4항)

## <무역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

무역위원회의 의무(제15.1조 제3항)	무역위원회의 권한(제15.1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협정의 적절한 운영 보장</li><li>② 협정의 이행과 적용의 감독 및 촉진, 그리고 일반 목표의 증진</li><li>③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업무 감독</li><li>④ 양 당사자간 무역관계 증진 방안 검토</li><li>⑤ 협정 관련 문제 발생의 사전 차단 및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 모색</li><li>⑥ 양 당사자간 무역 발전 연구</li><li>⑦ 협정의 적용대상 분야에 관한 그 밖에 관심 사안 검토</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전문위원회, 작업반 및 다른 기관의 설치 및 이에 대한 책임의 위임</li><li>② 이해당사자와의 의사교환</li><li>③ 협정 개정의 검토 및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의 개정</li><li>④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의 채택</li><li>⑤ 협정이 상정한대로 권고하거나 결정을 채택</li><li>⑥ 자신의 의사진행규칙 채택</li><li>⑦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대로 그 밖의 조치를 실시</li></ul>

- 한·EU FTA는 무역위원회가 '협정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협정에 규정된 사안'이란 협정에 규정된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사안만을 의미하며,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

※ 한·EU FTA 제15.4조 제1항

-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경우 모든 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다.

- 또한, 무역위원회의 결정 권한과 권한의 범위는 국회에서 한·EU FTA가 비준동의가 된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국회를 구속하며, 이러한 규정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음.

(오해 내용)

- "협정문은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이를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기준, 관세양허표, 안전기준 관련 부속서 등도 무역위원회가 개정을 결정할 수 있음."

(사실 관계)

- 한·EU FTA 협정문의 개정은 협정 제15.5조 제1항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 조항에 따라 개정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합의 및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 완료를 요건으로 함.
-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협정문의 개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 한·EU FTA 협정문의 개정과 관련한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①협정 개정의 검토 ②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협정 규정의 개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제15.1조 제4항 다호).

- 무역위원회가 협정의 직접 개정 권한을 갖는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란 제15.5조 제2항에 규정된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의미함.
- 제15.5조 제2항에서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을 제1항과는 달리 강제규정(shall)이 아닌 임의규정(may)로 규정한 것은, EU 집행위의 경우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에 대해 의회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우리의 경우,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협정문 개정이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할 경우 우리 국회의 동의가 요구됨.

※ 한·EU FTA 제15.5조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의정서 및 주석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그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 참고로, 협정 제2.5조 제4항에 따른 관세철폐의 가속화 또는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양허표 상의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의 대체와 관련된 경우, 동 사안은 협정의 개정에 해당하며 제15.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함.

### (오해 내용)

- "협정의 해석권을 무역위원회에 부여함"
- "협정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전문위원회, 작업반이라도 이를 설치할 권한마저 있음."

### (사실 관계)

□ 협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하는 규정은 한·EU FTA 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 많은 통상협정에 일반적으로 반영되어 있음.

※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제2항

- 각료이사회와 일반이사회는 이 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 협정이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해당하는 이행기구 산하에 전문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구에 새로운 전문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FTA에서 매우 일반적인 규정임.

※ 한·EU FTA 제15.2조 제2항

- 무역위원회는 자신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 한·EU FTA 제15.3조 제2항

- 무역위원회는 특별 임무 또는 대상을 위한 다른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작업반의 구성, 임무 및 기능을 결정한다. 그 작업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양 당사자 간 모든 정기 또는 임시 회합은 이 조의 의미에서 작업반으로 간주된다.

- 상기 규정은 한·EU FTA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체결 FTA에 모두 존재

## 2. 잠정발효 목표일시의 입법권 제한 여부

### (오해 내용)

- “이른바 7월 1일 한·EU FTA 발효설”
- “조약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제60조에 의한 국회의 권한이며, 정부가 국회에게 특정 기한을 정해 심사의 완료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위헌임.”
- “그동안 7월 1일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국회가 동의해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한 행태에 대한 국회의 경위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이 필요함”

### (사실 관계)

- (추진배경) 정부는 당초 2009.10.15 가서명 이후부터 한·EU FTA의 2010년 중 발효를 위해 준비해 왔으며, 이러한 추진 계획을 국회보고 및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대외적으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0.9월 EU 이사회의 한·EU FTA 승인 과정에서 EU내 일부 회원국이 발효시점을 당초 추진하였던 2010년중에서 1년 이상 연기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EU측은 EU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EU 이사회 결정으로 유럽의회 동의를 전제로 2011.7.1 잠정발효를 추진키로 결정함.
- (입법권 제한 논란) 한·EU 모두 금년 7.1 잠정발효를 각자의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 것임을 명확히 한 만큼, 국회 입법권의 침해로 볼 수 없음.
  - 금년 7.1 잠정발효 가능 여부는 우리 국회의 판단과 결정 사항임.
- (정부 기대) 한·EU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아래사항들을 감안할 때, 금년 7.1 잠정발효되는 것이 긴요함.
  - 우리 업계에서도 금년 7.1 잠정발효를 전제로 한·EU FTA를 활용한 EU시장 진출확대 방안을 준비 중

- o EU측 잠정발효 관련 내부절차는 금년 2.17 유럽의회의 한·EU FTA 동의안 처리로 이미 완료
  - o 특히, 최근 일본 지진 사태, 중동 지역의 정치 여건 변화 및 원화의 절상 추세 등으로 인하여 2/4분기 이후 우리의 대외 무역 여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바, 한·EU FT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대외 여건 개선 기대
- 금년 6월까지 잠정발효에 필요한 국내 법규 개정을 비롯한 우리측 내부절차가 모두 완결되어, 금년 7.1 한·EU FTA가 잠정발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 3. 협정 폐기 관련 조항

#### (오해 내용)

-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이 있음”
- “무엇이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적절한 조치가 무엇 인지를 파악해야 함”

#### (사실 관계)

- “한·EU FTA 협정에는 협정의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존재한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님.
- 협정은 서면통보로 협정의 폐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 통보시 별도의 제약은 없음.
  - ※ 한·EU FTA 제15.11조
    - 제2항 :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 제3항 :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이와 별도로 협정 상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이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
- 이는 일방 당사자가 이 협정 밖의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일방적 판단으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게 협정을 폐기할 경우 그 당사자를 보복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임.
- 동 조항은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이 폐기 되는 경우, 협정상 보장된 권리와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조항임.

-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따르지 않는 협정의 폐기로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될 경우 당사국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되,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한·EU FTA 제15.12조 제2항

-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이 협정의 폐기의 경우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2조 제2항은 “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당사국의 탈퇴는 당해 조약의 규정 또는 본 협약의 적용의 결과로서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은 조약의 종료 및 폐기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것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및 폐기 사유

- 조약의 규정에 따른 종료 (제54조 (a))
- 당사국들의 동의에 의한 종료(제54조 (b))
- 뮤시적 폐기 또는 탈퇴(제56조)
- 신조약의 체결에 의한 뮤시적 종료(제59조제1항)
- 조약의 중대한 위반(제60조)
- 후발적 이행불능(제61조제1항)
- 사정의 근본적 변경(제62조)
- 신강행규범의 출현(제64조)

## 4 관세 및 세입에의 영향

### (오해 내용)

- “정부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EU FTA로 인하여 직접 감소되는 관세는 10년간 연평균 1.7조원임”

### (사실 관계)

- FTA의 효과를 조세 수입의 감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특히, 우리와 같이 관세수입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국가에서는 조세 수입을 기준으로 FTA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우리의 총국세대비 관세비율(2009년): 5.5%
- 한·EU FTA로 인해 조세수입은 10년간 연평균 최대 2.2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조세연구원 분석)
  - 관세 철폐 등으로 연평균 1.7조원 세수가 감소(직접 감소효과)되나, 생산성 제고 등에 따른 성장 확대로 연평균 3.9조원 수준 세수 증가(간접 증대효과)가 예상됨.
  - 다만, 이러한 세수 증대 규모는 자본축적, 산업별 구조조정, 생산성 제고 정도 등 한-EU FTA로 인한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단위 : 억원)

	연평균	1~5년	6~10년
·전체효과(A+B)	<b>22,224</b>	155	44,294
- 직접감소효과(A) (수입부가세)	<b>△15,642</b>	△11,078	△20,206
- 간접증대효과(B)	<b>△1,549</b>	△1,097	△2,000
	<b>39,415</b>	12,330	66,500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 주 : 1) 경제성장에 의한 간접적인 조세수입 증가효과는 KIEP 외(2010)에서 제시 한 기본축적모형 중 생산성 증대효과를 고려한 GDP 성장률 5.62%p를 이용하여 추정  
 2) 한-EU FTA가 2011년부터 발효된다는 전제아래 모든 수치를 200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5. 중개(mediation) 절차

### (오해 내용)

- “자동차, 전기제품, 광우병 검역 등을 ‘비관세’조치라고 하여 이에 대한 의무적 중개(mediation) 절차를 규정함.”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양측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상이슈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비관세 분야에서의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하였음.
  - FTA 당사국간 사법적인 분쟁해결 절차만을 두게 될 경우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비관세 중개절차 개시 요청을 할 경우 타방 당사자는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비관세 중개절차는 우리가 EU측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로서 우리측에 불리한 제도가 아님.
  - 피요청 당사자의 영역에서 절차가 진행되므로, 절차의 남용 가능성도 비교적 낮으며, 중개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의 서면선언으로 중개절차는 종결될 수 있음.
- 또한, 중개절차는 일반분쟁해결 절차와 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제도로서,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를 교체,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제도임.
  - 중개절차에서 표출된 각측의 입장 및 중개인이 제안한 해결안 등은 일반분쟁해결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II. 상품/SPS/무역구제**

# 1. 유럽산 쇠고기 검역

## (오해 내용)

- “한·EU FTA는 OIE 지침에 따라 수입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은 EU 회원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특정품목의 검역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양 당사자의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확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WTO SPS 협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위생·검역 주권을 재확인하고 있음.

### ※ 한·EU FTA 제5.4조

- 양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당사자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 따라서,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쇠고기 등 축산물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농식품부 고시의 수입 위험분석절차(8단계)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함.

※ 농식품부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상 수입위험분석절차 8단계 :

- (1)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가축 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수입 허용여부 결정, (6)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 (8)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 또한, 우리나라는 한·EU FTA에 따라 수출국의 동식물 위생상황에 기반하여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음.

### ※ 한·EU FTA 제5.7조 제2항

-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세계동물보건기구”라 한다)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이하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 한다)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

### (오해 내용)

- “광우병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을 결정할 때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제5.8조는 수출국의 증명의무를 규정한 WTO SPS 협정과 달라 독소조항이다?”

### (사실 관계)

- WTO SPS 협정에서 수출국으로 하여금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한 규정은 한·EU FTA에도 도입됨.

#### ※ 한·EU FTA 제5.8조 제5항

- 수출 당사자는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수입 당사자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하여 수입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 한·EU FTA는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을 결정할 때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고, 수출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수출국의 정보 및 결정을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해당 지역의 위생상황을 판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당사자가 수출국이기 때문임.

- 또한 수출국의 정보 및 결정은 WTO SPS 협정, 세계동물보건 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객관성 확보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한·EU FTA상 수입국은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결정시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고려 (take into consideration)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국이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협정상 의무의 위반은 아님.

- 수출국이 내린 결정은 수입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에 불과함.

※ 한·EU FTA 제5.8조 4항

-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수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도록 하고, 수출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가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당사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해 내용)

- “협정 발효 후 2년 안에 광우병 청정 혹은 적게 발생하는 나라의 결정 절차에 관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규정하였다?”

(사실 관계)

- 한·EU FTA는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 결정을 위한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협정 발효로부터 약 2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2년 내에 완료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님.

※ 한·EU FTA 제5.8조 제3항

- 양 당사자는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한 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약 2년 이내에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신뢰구축 협력의 성공적인 완료는 제5.10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다.

## 2. 농산물 양허 관련 WTO와의 관계

### (오해 내용)

- “한·EU FTA 및 한·미 FTA는 1994년 WTO 가입 시 정부가 농민에게 약속했던 최소한의 농업보호 장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임”

### (사실 관계)

- 정부는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갖는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음.
  -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제외, 관세존속기간의 장기화, 계절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개방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특히, 쌀은 한·미 FTA 및 한·EU FTA 모두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
    - 또한, 한·EU FTA에서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등의 관세는 현행 관세를 유지

### 한·EU FTA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방식

【양허제외】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현행관세 유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 【계절관세】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3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0년간 세이프가드)
- 배: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 급증시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액,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9개 품목

- 이와 함께,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2010.11.17 향후 10년간(2011-2020) 2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 15년간 누적 피해규모(농촌경제연구원 추정) : 약 2조원

#### (오해 내용)

- “한·유럽연합 협정안에 이미 ‘추가적인 관세 철폐’를 위한 검토 일정이 아예 잡혀 있음(built-in 2.5조 4항)”
- “쌀의 관세철폐 문제가 한·미, 한·EU FTA의 추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임. 당연히 이 쌀의 관세 철폐 가속화도 FTA의 적용 범위임”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협정 발효 3년 후,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여타 FTA에서도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

- 실제 관세철폐를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리측의 동의 없이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추가 자유화는 가능하지 않음.

※ 한·EU FTA 제2.5조 제4항

-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 우리나라 쌀의 경우, WTO에서 관세화 유예를 한 품목으로써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양허를 하지 않았으며, FTA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철폐 가속화의 대상 품목이 아님.

### 3. TRQ 관련 사항

#### (오해 내용)

-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는 무관세 TRQ를 대폭 신설하고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관세보호장치를 훼손함”

#### (사실 관계)

- 우리는 EU와 협상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철폐기간을 10년 이상 장기화하도록 노력하였고, 이러한 예외적인 조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EU측에 일정 물량의 TRQ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음.
- 또한, 협상과정에서 품목별 TRQ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EU에 대해 TRQ를 허용한 품목의 경우 할당초과 물량(out-quota)에 대한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철폐 기간을 확보
  - ※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물량, 관세율쿼터 등으로 불리며,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요 낙농품의 TRQ 물량과 관련, 최근 소비량 및 수입량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FTA로 인한 TRQ 물량은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 치즈의 소비 및 수입현황
    - 치즈 소비량 증가 추이 : (99년) 16,374톤 → (03년) 45,806톤 → (09년) 64,526톤
    - 치즈 소비량 증가율(최근 10년간) : 294%
    - 대세계 총 수입량(09년) : 49,024톤 / 대EU 수입량(09년) : 5,488톤
    - FTA상 치즈 TRQ : 총 11,560톤 (한·미 FTA 7,000톤 + 한·EU FTA 4,560톤)
  - ※ 전·탈지분유 및 연유의 소비 및 수입현황
    - 소비량 증가 추이 : (99년) 22,285톤 → (03년) 48,143톤 → (09년) 35,386톤
    - 소비량 증가율(최근 10년간) : 59%
    - 대세계 총 수입량(09년) : 11,195톤 / 대EU 수입량(09년) : 1,470톤
    - FTA상 TRQ 물량 : 총 6,000톤 (한·미 5,000톤 + 한·EU 1,000톤)

## 4. 냉동 삼겹살에 대한 ASG 적용 문제

### (오해 내용)

- “EU의 냉동삼겹살은 EU의 1위 한국 수출품목인데도, 농산물 긴급수입 제한관세(ASG)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냉동이 아닌 냉장 삼겹살로 되어 있음”

### (사실 관계)

- EU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 삼겹살의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간인 10년으로 확보하여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나, 협상과정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조치까지 설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음.
- 돼지고기는 EU의 핵심 관심품목으로 EU측은 협상 초기부터 냉동 삼겹살에 대해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우리는 우리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냉동 삼겹살에 대해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함.

#### ※ (돼지고기 주요품목 양허현황)

- 냉동 삼겹살은 10년 철폐, 냉동 기타부위(목살 등)는 5년 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목살 등)는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오해 내용)

- “EU 냉동 삼겹살에 대해 설령 양자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발동 요건이 농업세이프가드보다 더 까다롭고, 관세철폐후 10년까지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다자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U 국가와 제3의 국가를 대상으로 발동해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 (사실 관계)

- 냉동 삼겹살에 대해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조치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한·EU FTA의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BSG)의 발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철폐 기간 및 이후 10년까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이 가능하므로, 냉동 삼겹살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우리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봄.

- o 또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 요건을 충족시, 다자 세이프 가드(GSG) 조치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조치는 다각적으로 가능함.
-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2010.11.17 발표)을 통해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 o 향후 10년간(2011-2020) 2조원(농촌경제연구원 추정 15년간 누적 피해규모) 규모의 지원 예정
- 이에 추가적으로, 2011.5.2 여·야·정은 축산농가에 대해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함.

## <축산업 분야 지원 대책>

세부내용	금액	기간	
<b>기존 FTA 지원 규모 확대</b>			
- 한·미 FTA대책의 축산대책(축사시설 현대화 등 4조 7,000억원)	5천억원 증액	2조원	
- 축산업 발전대책(도축·가공업체 지원 등 2조 1,000억원)	5천억원 증액		
- 기타 계속사업(시·도 가축방역 사업 등)	5천억원 증액		
<b>신규사업 추가</b>			
- 가공원료유·한우조직화 지원 등	5천억원	2011~2020 (10년)	
<b>세제상 지원 강화</b>			
- 영농상속 공제액 상향(2억원→5억원)으로 10억원까지 비과세			
- 축산농가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 중심의 10개 품목을 부과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현재 12개)			
-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단축(40년→20년)			
<b>제도 개선 병행</b>			
- 8개 과제를 선정, 2013년까지 완료 (이력관리체계 확대, 가축분뇨 활용 증진 등)			

### 2011년도 예산 반영 현황

- 2010.11월 발표 “한·EU FTA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른 반영
  - 축산 분야 : **583억원** 반영
  - 가공 원료유 지원(100억), 한우농가 조직화(50억) 등 신규사업 지원
  - 축사시설 현대화, 도축가공업체 지원, 시·도 가축방역(컨설팅포함), 수출작업장 현대화 등 주요사업에서 **400억원** 증액
- ※ 2007.11월 발표 “FTA 국내 보완대책”에 따른 2011년 농수산업 분야 예산 반영 현황 : 총 **1조 7,000억원**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 : 1조 **6,385억원**
  - 직접적 피해보전 : **615억원**

## 5. 농산물 수출제한 조항

### (오해 내용)

- “한국은 유럽의 일방적인 농산물 수출 제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확보하지 못함. 유럽이 농산물 공급부족으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출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2.15조).”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WTO GATT 제11조를 원용, 수출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식량수출 통제는 GATT 제11조 2항의 요건(식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또는 GATT 20조(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

#### ※ 한·EU FTA 제2.9조

-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한·EU FTA는 GATT 제20조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30일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GATT 제20조상의 요건에 추가하여 30일간 협의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WTO 규정보다 오히려 강화된 것임.

#### ※ 한·EU FTA 제2.15조

-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자호 및 차호에 규정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게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전 정보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 6. 반덤핑 규정

### (오해 내용)

- “오히려 협정은 반덤핑 조사에서 WTO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피조사 한국 기업의 견해 표시를 위한 청문기회를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후퇴(3.8조 4항)”
- “비록 WTO 반덤핑 협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들을 의무화한 조항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한국과 같은 대표적 피해자에게 FTA로 인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사실 관계)

-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EU의 반덤핑 남용을 방지하고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반덤핑 조치 남용 방지 및 절차 투명화를 WTO협정 수준보다 강화한(WTO plus) 요소 도입에 합의하였음.
  - 또한, 협상을 통하여 EU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FTA 발효로 관세 철폐·인하 등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EU의 대한국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 감소가 기대됨.
- ※ 한·EU FTA 협상 타결 이후 EU의 우리에 대한 반덤핑 조치 7건 중 4건이 해소
- 한·EU FTA 제3.8조 제4항상의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한” 문구는 WTO 반덤핑 협정상의 “청문 기회 부여 등의 절차는 조사당국의 신속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규정(제6.14조\*)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WTO 협정 수준에서 후퇴한 것이 아님.

\* WTO 반덤핑 협정 제6.14조

- 위에 규정된 절차는 회원국 당국이 이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및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판정 또는 최종판정에의 도달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또는 잠정조치나 최종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 반덤핑 분야 주요 WTO Plus 합의 내용

- ① 반덤핑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상대국에 사전 통보
  - ※ 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조사 개시전 통보 의무만 있음
- ② 덤팅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 (de minimis) 적용 범위를 재심으로 확대
  - ※ WTO 반덤핑 협정상 미소기준은 원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여부 불분명
- ③ 덤팅 마진이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 부과("Lesser Duty Rule")
  - ※ WTO 반덤핑 협정상 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
- ④ 반덤핑 관세부과 전 공익고려 조항
  - ※ WTO 반덤핑 협정상 관련 규정 없음
- ⑤ 비합산(non-cumulation) 검토의무 부과
  -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
  - ※ 비합산 검토의무란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합산하여 산업피해를 판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할 의무

### (오해 내용)

- “반덤핑 분야에 대해선 FTA의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도 없음.”

### (사실 관계)

- 반덤핑 조치 절차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반덤핑 관련 분쟁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 한-EU FTA에는 반덤핑 분야 관련 WTO 반덤핑협정 상의 규율에 추가하여 보다 강화된 절차적·실체적 규정을 포함한바, 이 부분에 대해서 FTA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한 것임.

## 7. 관세철폐 일정(무관세 비율)

### (오해 내용)

- “EU는 FTA와 관계없이 공산품(25~97류) 중 2,057개를 무관세로 세계 153개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FTA와 관계없이 공산품 중 1,803개를 무관세로 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EU는 품목수 기준 99.4%, 우리는 품목수 기준 95.8%가 3년내 조기관세 철폐되는 것은 정확한 사실 설명임.
- 관세 즉시철폐 품목 중 EU측의 무관세품목 비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승용차(10%), 전자제품(14%) 등 우리의 對EU 주요 수출 품목이자 일본 등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과 수출 잠재능력이 있는 섬유(최대 12%), 신발(최대 17%), 석유화학(최대 6.5%) 품목의 관세율은 높기 때문에 한·EU FTA에 따른 상당 수준의 관세철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 ※ 우리 주요 품목의 대EU수출현황(2004~2006 평균 수출액)
    - 승용차 82억3천만불(총수출의 18.7%)
    - TV·오디오·비디오 5억7천만불(1.3%)
    - 섬유류 12억9천만불(3.0%)
    - 석유화학 7억1천만불(1.6%)
    - 신발 2천9백만불(0.1%)
- 현재 일본업계가 한·EU FTA로 인한 유럽시장 잠식을 크게 우려하며 EU·일본 FTA 협상 개시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한·EU FTA 효과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연구원(Okuda Doru 박사)은 2010.6월 일본 이코노미스트지 기고를 통해 한·EU FTA 발효 후 첫해 일본의 대EU 수출액 중 2억 6,800만불(연간)이 한국의 수출로 전환되고 향후 30억불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오해 내용)

- “관세율의 현 수준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철폐하는가?”

### (사실 관계)

- 현행 관세율 수준이 EU보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의 관세철폐액이 EU보다 높을 수는 있으나, FTA로 인한 효과를 관세철폐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FTA 발효로 인한 수출 증대가능성과 이에 따른 산업성장 효과를 보아야 할 것임.
- EU는 세계 제1위 경제규모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의 제2위 교역파트너이며, 승용차, 가전제품, 섬유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 FTA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됨.
  - ※ EU의 GDP(2009년, IMF)는 16조 4천억불로 미국(14조 3천억불)을 능가하며, 인구도 5억에 이룸.
  - ※ 2010년 기준, 우리의 對EU 총교역은 922억불, 수출은 535억불로 각각 미국(총교역 902억불, 수출 498억불)보다 큼.
    - 對EU 무역수지 흑자는 148억불 규모로 對美흑자(74억불)의 2배 수준
  - ※ 우리 주요 수출 가능품목의 EU 관세율 : 승용차(10%), TV·오디오·비디오(14%), 섬유류(최대 12%), 신발(최대 17%), 석유화학(최대 6.5%) 등
- 2010.10월 발표된 KIEP 등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관세철폐의 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대EU 수출은 연평균 25.2억불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5조원 수준의 증대 효과가 예상됨.
  - 특히 자동차(14.1억불), 전기전자(3.9억불), 섬유(2.2억불) 등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 한-EU FTA로 대 EU 수입 또한 연평균 21.3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 중 상당부분이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로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효과가 기대

《 한-EU간 10대 교역품목 현황(2010년)》

수출품목(관세율)	금액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	비중
선박(0~2.7)	136	25.4%	반도체제조용장비(0~8)	25	6.5%
평판디스플레이(0~3.7)	54	10.1%	승용차(8)	20	5.2%
승용차(5~10)	33	6.2%	의약품(0~8)	19	4.9%
자동차부품(1.7~19)	31	5.8%	자동차부품(8)	14	3.6%
무선전화기(0)	30	5.6%	기타정밀화학원료(0~8)	11	2.8%
집적회로반도체(0)	20	3.7%	집적회로반도체(0)	11	2.8%
개별소자반도체(0)	16	3.0%	펌프(8)	10	2.6%
경유(3.5)	14	2.6%	원동기(0~8)	8	2.1%
칼라TV(0~14)	12	2.2%	합성수지(6.5~8)	7	1.8%
합성수지(0~6.5)	9	1.7%	기타기계류(0~16)	6	1.6%
소 계	355	66.4%	소 계	131	33.9%
전체 합계	535	100%	전체 합계	387	100%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기준, 관세율은 MFN 2007)

### III. 비관세

# 1. 전기전자 제품 인증 문제

## (오해 내용)

- “협정 부속서 (2-나)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인증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사실상 폐지함.”

## (사실 관계)

- 한-EU FTA가 발효되어도 안전인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님.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148개 품목 중에서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53개 품목<sup>\*</sup>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이후에도 계속 인증 요구가 가능함 (한·EU FTA 부록 2-나-3).
    - \*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세탁기, 전기담요, 전자레인지, 가습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식기세척기,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변압기 등
    - \* 경과기간 후 상기 53개 품목에 대한 위험평가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위험평가 결과, 해당 품목에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적용할 경우 인간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예외품목으로 계속 유지 가능
- 한편, 정부는 안전인증제도의 간소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07년 「자율 안전확인제도<sup>\*</sup>」를 도입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여옴.
  - \* 위해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시험만 받으면 인증 없이 시장출시 가능한 제도
- 이러한 우리의 규제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한·EU FTA에서도 전기 전자제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전기 전자제품의 급속한 기술발전 및 빨라지는 제품주기 등을 감안하여, 간소한 적합성평가절차를 채택함.

### (오해 내용)

- “경과기간 동안 EU 지정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수용”

### (사실 관계)

- 제기된 내용과 달리, 안전인증의 경우, 협정 발효후 3년 동안 우리 절차에 따라 지정(EU측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아님)된 적합성 평가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용토록 되어 있음.
  - 즉, △우리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한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또는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CB Scheme)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에 근거하여 우리정부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인증서를 발행함.
    - \* 본 사항은 한-EU FTA와 관계없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항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특히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에 가입한 나라는 CB 인증서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우리나라는 1987년에 IECEE에 가입)

### (오해 내용)

-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향후 이를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제할 경우 부속서상 제반 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사실 관계)

- 부속서 2-나 제3조 각주3에서 규정된 사항은 현재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새로운 전기·전자 제품 포함)에 대해서도 우리 규제 당국이 향후 적합성 인증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신규 제품에 대한 미래규제권을 제한한 것이 아님.

## 2. 자동차 안전 기준

### (오해 내용)

- “유럽 자동차 기준인 UN ECE 및 GTR에 한국의 29개 안전기준사항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음”

### (사실 관계)

□ UN ECE 및 GTR 규정은 유럽 자동차 규정이 아닌 국제기준으로서, 한·EU 양측은 UN ECE 또는 GTR 규정중 자국의 국내기준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협정 발효후 5년 내에 동 국내기준을 해당 국제기준과 조화토록 규정되어 있음.

※ UN ECE 기준 : 안전·환경·에너지 및 도난방지 요건에 관한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단일표준 확립을 위한 1958협정(49개 당사국, 우리나라는 2004.11월 가입)에 근거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

※ GTR(Global Technical Regulations) : 자동차 및 부품에 관한 세계기술표준 개발을 목적으로, 1998협정(31개 당사국, 우리나라는 2000.11월 가입, 미국도 가입국)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동차 기술규정

□ EU측이 국제기준과 조화시켜야 할 자체 기준이 우리보다 적은 것은 EU가 이미 거의 모든 UN ECE 기준을 채택하였기 때문임.

※ 우리측 : 29개 기준, EU측 : 1개 기준

### (오해 내용)

- “51개 자동차 안전 및 환경기준에 대하여 해당 UN ECE 기준 및 8개 EU 규정에 동등성 부여함”

### (사실 관계)

□ 한·EU FTA상 안전기준 내용은 우리가 EU 기준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준과 유사한 국제기준(UN ECE, GTR)을 인정한 것임.

※ 우리나라 기준에 성능시험항목(42개) 중 26개 항목에 대해 국제기준인 UN ECE 규정과 GTR 규정의 해당 기준을 우리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한·EU FTA에 따라 6개 항목을 추가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새롭게 인정한 성능시험항목(6개) : ①충돌시 연료누출방지, ②범퍼 충격흡수, ③좌석안전띠 부착장치, ④어린이 보호용 좌석부착장치, ⑤소음방지장치, ⑥경음기
- ※ 한편, 한·EU FTA에서 EU측은 74개 안전기준 항목에 대해 국제기준인 UN ECE 규정과 GTR 규정의 해당기준을 EU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

#### (오해 내용)

- “한국 판매 규제 및 리콜은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각 당사국이 자기인증제 또는 형식승인제하에서 적합성 검사와 검사결과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도록 되어 있음.(한·EU FTA 부속서 2-다 제8조 제2항 및 제3항)
- 또한, 관련 규정 및 요건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안전·공중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긴급하고 결정적인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와 EU 양측은 모두 제품의 출시 거부 또는 리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한·EU FTA 부속서 2-다 제8조제4항)

#### (오해 내용)

- “조화 및 동등성 대상 기준에서 UN ECE와 다른 새로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규정”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자동차 표준에 관한 국제기준인 UN ECE 규정 또는 GTR 규정의 완성이 임박한 분야에서 이와 다른 새로운 국내 기술규정의 도입을 자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자동차 기술 규정과 국제 기준과의 수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한·EU FTA 부속서 2-다 제4조)
- 단, 특정 UN ECE 또는 GTR 규정이 도로안전, 환경, 공중건강 보호에 부적합하다는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와 EU 양측 모두 새로운 기술규정 도입이 가능토록 규정함으로써 규제 당국의 권한을 유지함.

### (오해 내용)

-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의 자동차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출시를 규제할 수 있음”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양측이 자의적인 시장접근 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한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시나 EU 자동차의 한국 수출시 양측 모두 누릴 수 있는 권리임. (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
  - 단,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 가능한 경우, 양측 규제 당국이 출시를 거부하거나 회수하는 조치(리콜)를 가능토록 하여 규제 당국의 권한을 유지함.

※ 한·EU FTA 부속서 2-다 제6조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의 제품)

1. 어떠한 당사자도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이 아직 규제되지 아니한 그러한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체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품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 제품의 출시를 거절하거나 시장에서 이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다른 쪽 당사자와 해당 경제 운영자에게 이 결정을 즉시 통보한다. 이 통보는 모든 관련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포함한다.

### 3.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 (오해 내용)

-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것이 보험약품 약가 지출인데, 협정은 제약사에 대해 가격산정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공하였음.”

#### (사실 관계)

- 한-EU FTA의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투명성 조항은 제약업체들에게 보험 급여정책 및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보험급여 결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임. (한-EU FTA 부속서 2-라 제3조)
- 동 조항을 통해 제약업체들의 보험급여(약가산정)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더라도, 보험급여(약가) 결정과정에서 제약업체들이 제기하는 가격인상 등의 요구사항은 현행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할 것임.

#### (오해 내용)

- “협정문은 특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 가치 인정은 시장독점 가격 인정임.”

#### (사실 관계)

- ‘특허’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특허 등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은 시장독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규정은 보험 급여 결정(약가 산정)시 특허 의약품의 혁신적 가치를 적절히 고려·반영한다는 의미임.

## 4.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 (오해 내용)

- “한국은 서로 상이한 미국 기준과 유럽 기준 모두에게 다 동등성을 부여하고, 자신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외국 자동차에게도 요구하지 못한 것임”

### (사실 관계)

-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EU 기준 모두에게 동등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한·미 FTA는 1만대 이하(4,500대 이하, 4,501대-10,000대) 판매 제작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배출가스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1만대 이상 판매 제작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미 FTA 부속서 9-나 부속서한)
  - 동 규정은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규정이며, 미국 기준에 대해 동등성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님.
- 한편, 한-EU FTA의 경우에는 한·미 FTA가 발효될 때까지 과도조치로 1만대 이하(250대 이하, 251대-4,000대, 4,001대-10,000대) 판매 제작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배출가스 기준보다 완화된 배출기준을 적용도록 되어 있으나, 1만대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함.
  - 또한 동 한EU FTA상의 과도조치는 한·미 FTA상의 기준보다 강화된 수준임.

### <한·EU FTA 배출가스 협용 기준>

한·EU FTA 발효후 한·미 FTA 발효 이전		한·미 FTA 발효후(한·미 FTA 기준)	
차량 대수	NMOG 수치	차량 대수	NMOG 수치
1-250대	0.047g/km (LEV 기준)	1-4,500대	0.047g/km (LEV 기준)
251-4,000대	0.039g/km	4,501-10,000대	0.037g/km
4,001-10,000대	0.030g/km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10,001대 이상	0.025g/km (ULEV 기준)		

(오해 내용)

- “기준 미달 유럽 OBD 예외 시행”

(사실 관계)

- EURO 6 OBD는 우리나라 OBD 기준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인정되며, 동 EURO 6 OBD 기준이 2014년에 도입될 때까지 EURO 5 OBD 장착 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를 2010년부터 적용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음.
  - 동 경과조치는 자동차 교역의 특수성(판매계획의 수립, 주문, 운송 및 통관절차까지 장기간 소요)을 감안, 한·EU FTA가 2010년 중 발효 되었을 경우에 자동차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임.
- 다만, 2010년 중 한·EU FTA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부 고시로 다음 년도의 경과조치 상 적용대수(Euro 5 OBD 쿼터)를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정이 2010년 이후에 발효될 경우도 고려하고 있음.
  - ※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2
    - 2. 한·EU 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적용년도를 넘기는 경우는 다음 년도의 적용대수에서 감한다.
  - 따라서, 2010년에 협정이 발효되지 않을 경우, 2010년 판매된 Euro 5 OBD 장착 자동차의 수만큼, 2011년 Euro 5 OBD 쿼터에서 삭감토록 함에 따라, Euro 5 OBD 쿼터 총량은 변함이 없음.
- 현행법상 OBD 관련 사항은 고시 규정이므로, 입법권 침해 주장은 적절치 않음.

## 5. 유럽의 REACH(화학물질 규제) 문제

### (오해 내용)

- “유럽은 2008년부터 화학물질 등록평가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수단이 협정에는 없음”

### (사실 관계)

- 화학물질 부속서는 EU가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승인제도)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협력을 요구한 분야임.
  - 화학물질 비관세 관련 사항을 한-EU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과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화학물질 규제 관련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메커니즘 확립
    - 화학물질 분야 협력 증진과 규제 관련 대화를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설치
- ※ 참고로, 우리나라도 EU의 REACH와 유사한 제도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11.2.25 입법예고 하였으며, ‘11년 말 입법을 목표로 추진중임.

### (오해 내용)

-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조합 등에 대하여 EU의 현지 개인이나 법인만을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임”

### (사실 관계)

- EU의 유일대리인 제도는 한-EU FTA 협정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며, EU측이 REACH를 운영하면서 외국 수출자의 영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REACH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함에 있어서 EU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영업기밀을 지켜주기로 계약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임.

## 6. 자동차 관련 무역제한 조치

### (오해 내용)

- “자동차 부속서 제7조는 특정의무가 아닌 무제한적인 의무임”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면서도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규제 당국이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EU FTA 부속서 2-다 제7조)
  - 단, 그러한 조치는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토록 함으로써, 조치의 남용 가능성은 배제함.
- 우리 자동차도 동 규정에 따라 유럽시장에서 한·EU FTA에 따른 시장 접근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손상되는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한·EU FTA 부속서 2-다 제7조 (무역을 제한하는 그 밖의 조치)

-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특정적인 그 밖의 규제조치를 통하여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시장접근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는 도로 안전, 환경 또는 공중 건강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실증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 IV. 원산지

## 1. 어묵/게맛살 원산지 기준

### (오해 내용)

- “한·미 FTA에서 외국 생선살을 쓰더라도 한국산 어묵으로 인정되던 기준이 한·EU FTA에서 왜 바뀌었나?”

### (사실 관계)

- 특정 품목의 원산지 기준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FTA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EU는 주요 기체결 (EU·칠레, EU·멕시코) FTA에서 가공 수산물에 대해 완전획득된 수산물을 사용할 것을 일관되게 규정해 왔으므로, 한·미 FTA와 한·EU FTA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우리는 협상 당시 일반기준에서는 EU입장을 수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실리를 확보함.

### (오해 내용)

- “원산지 예외물량과 관련, 왜 비싼 명태살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도록 합의하였나?”
- “예외적으로 확보한 물량 2,000~3,500톤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 (사실 관계)

- 한·EU FTA 상 한·EU 양측 모두 어묵의 MFN 세율은 20%이며, 3년 철폐 대상품목임.
- 수산가공품류(16류)에 대해서 양측은 일반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바, 한·EU FTA 발효 후 3년차부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어묵에 대한 EU측 관세는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력 수출품목인 어묵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완전생산기준 예외물량)을 확보하였음.

\* 어묵 조제품의 중량 당 최소 40%가 어류로 구성되고, 연육의 주요 원료로 명태 종 사용

- 어묵의 원산지 기준 면제물량
    - 이행 1년차 연 쿼터: 2,000톤
    - 이행 2년차 연 쿼터: 2,500톤
    - 이행 3년차 및 그 이후 연 쿼터: 3,500톤
  - 연간 3,500톤의 원산지 기준 예외물량은 우리 업계의 2010년 대EU 어묵 수출물량의 154% 수준으로, EU 어묵 수입이 고급품 위주이며 우리 업계의 어묵 생산 양태를 감안할 때 그 조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우리 업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완전생산기준 또는 원산지 면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20%의 MFN 관세에서 현행과 같이 어묵 수출을 계속할 수 있음.
- 현재 EU의 MFN 관세(20%)에서 우리 업계는 연 2,000톤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EU측에 어묵을 수출하고 있음.
- 어묵의 재료는 생산살, 밀가루, 향료 등으로 다양하나, 우리 업계는 EU로 수출되는 어묵은 생산할 때 어류를 40~50% 수준으로 투입하고, 투입되는 어류의 주 재료로 명태 생선살을 사용하고 있음.
- ※ HS 제1604.20소호(어묵) 수출 현황
- | 국가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중량(톤) | 중량(톤) | 중량(톤) |
| 대세계 | 7,353 | 7,449 | 7,652 |
| EU  | 2,577 | 2,123 | 2,273 |

## 2.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치패, 치어)

### (오해 내용)

- “한·EU FTA하에서는, 한국 수산 양식업이 북한이나 중국에서 치패(조개 종자)나 치어(새끼고기)를 들여와 양식할 경우 일체 이를 한국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 (사실 관계)

- 한·EU FTA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 한·EU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우리측에 유리한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함.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꿀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원산지 기준 관련, EU측은 종전 체결한 주요 FTA에서 수산물 및 제3국에서 수입한 치어(fry)를 양식하는 경우에도 완전 생산기준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였음.
- 우리는 양식 관련 원산지에서는 우리 입장을 최종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어묵 관련 원산지 예외 물량을 확보하고, EU측의 수산물 관세가 조기에 철폐되도록 하였음.
  - ※ 참고로 바지락 양식을 위하여 북한으로부터 어린 바지락(치패)을 수입한 실적은 없음.

**《우리의 대EU 수출 100만불 이상 수산물 EU측 양허》**

HS	품목	관세율	대EU 수출 (\$)	EU 양허
16042005	연육 조제품	20	14,502,969	3년
03079913	냉동 기타조개	8	8,875,131	3년
03074938	냉동 오징어	6	8,759,330	3년
03037998	냉동 기타어류	15	8,494,967	3년
03034212	냉동 활다랑어(조제용)	20	4,510,181	0
03079911	냉동 오징어	8	3,728,334	3년
03074931	냉동 꼴뚜기	6	3,377,096	3년
16059030	저장 또는 저장처리 기타 연체	20	3,258,912	3년
03061350	냉동 새우	12	3,162,220	0
16051000	저장 또는 저장처리한 게	8	2,612,017	0
03034311	냉동 가다랑어	22	2,324,542	0
03074935	냉동 꼴뚜기	6	2,194,807	3년
03074911	냉동 갑오징어	8	2,120,831	0
03075910	냉동 문어	8	2,120,203	3년
03033970	냉동 넙치	15	1,932,548	5년
03061380	냉동 새우	12	1,670,456	0
03036090	냉동 대구	12	1,508,137	0
03074918	냉동 갑오징어	8	1,446,886	0

\* 품목은 HS 2006 기준, 금액은 2004-2006 평균 기준임

### 3. 관세환급 규정/EU측 이행법안

#### (오해 내용)

- “한·EU FTA 발효후 5년이 지나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품 관세 환급액을 약 38% 정도 산감당한다?”

#### (사실 관계)

- 한·EU FTA의 관세 환급 세이프가드 규정은 현행 우리의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협정 발효 후 5년 후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였음.
  - 관세환급 규정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역외산 재료 조달방식 (sourcing pattern)의 변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발동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 기본원칙: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가능
- 구체적 요건: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
- 경감요인: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 상기 증가율의 경감요인으로 고려
-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

### ○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 관세환급제도 검토 결과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 요청
- 발동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 적용(객관적인 패널(3인)을 구성하여 결정)
-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

※ 예컨대 현재 실행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5%만 환급됨.

### ○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검토 실시

- 협정 발효 5년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 실시

\*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4조

### (오해 내용)

- “EU측이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일방적으로 ‘10% 이상’으로 규정함.”

### (사실 관계)

- EU가 도입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제14조 제2항)상의 ‘현저한(significant)’의 기준을 10%로 설정한 바, 이는 동 기준 충족 시 EU 집행위가 한국 정부와 “협의”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이로 인해 관세환급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님.

- 한·EU FTA 상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인 “현저한(significant) 초과”가 충족되는지 여부는 EU측의 10% 내부 기준과 무관하게 EU측이 우리와의 협의(협정 발효 5년후 가능) 과정에서 사안별로 입증해야 함.
  - 한·EU FTA는 협의 결과 한·EU FTA상 관세환급 제한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토록 규정함.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4조 제3항)

#### (오해 내용)

- “EU는 발효일로부터 바로 한국 자동차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한국 자동차가 관세 환급 혜택으로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사실 관계)

- EU가 도입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은 수입 급증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동향을 관찰토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동향 관찰(surveillance measure) 제도는 EU의 일반세이프가드 규정 (Council Regulation (EC) 260/2009 Chapter IV)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새로이 포함된 내용은 아님.

#### (오해 내용)

- “유럽의회도 세이프가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위원회가 신청 거부시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

#### (사실 관계)

- EU가 도입한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 자체에는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 관련 유럽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음.
- 어떠한 경우에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의 결정 여부는 집행위에 직권 결정사항이며, 한·EU FTA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EU 집행위가 조사개시를 결정할 수 있음.

- o 다만,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의 채택과정에서 본문에 첨부된 “Joint Declaration”에는 유럽의회가 집행위에 대해 세이프가드 직권조사 개시를 권고(recommend)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위의 조사 개시 결정과 관련한 EU측의 내부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음.

## 4. 인증수출자 제도

### (오해 내용)

- “EU·멕시코, EU·칠레 FTA에서는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지 않아도 수출자가 원산지 자율증명을 할 수 있는 있는데 반하여, 한·EU FTA에서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로 인정받지 않으면 FTA혜택을 누릴수 없다?”

### (사실 관계)

-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허용되며, 6,000유로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함.
  -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를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 기업 자체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
- EU·칠레, EU·멕시코 FTA에서는 한·EU FTA와는 달리 수출자의 자율 증명제도가 채택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EU·칠레, EU·멕시코 FTA에서도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야만 자율증명이 가능함.
  - EU·칠레, EU·멕시코 FTA 등에서 도입한 ‘EUR.1 Movement Certificate’은 EU의 고유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으로서 기관증명시 사용

### (오해 내용)

- “EU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1975년부터 기시행중이므로 100% 등록되어있으나, 우리측의 인증수출자 지정실적은 미비하다?”

### (사실 관계)

- 현재까지는 업계의 인식 부족, 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임.
- 정부는 2011.7.1 한·EU FTA 잠정발효에 대비하여 대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11. 4월말 기준 전체 대EU 수출액 기준 59.1%에 대해 인증수출자(업체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정이 완료되었음.

###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2011.4월말 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합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업체별 인증	-	-	1	-	1	1	6	19	31	34	25	18	18	154
품목별 인증	-	-	-	-	7	23	89	96	93	75	52	127	143	705
합 계	-	-	1	-	8	24	95	115	124	109	77	145	161	859

- ※ 對EU 수출금액 대비(2010년 기준) : 59.1% (月평균 4.54% 증가)
- ※ 인증대상기업(8,206개, 2010년 기준) 대비 : 10.4% (月평균 0.8% 증가)
- ※ 인증 업체 중 대기업/중소기업\* 비율 : 14.5%/85.5% (125개/734개)

#### ① 홍보 및 지원노력 강화

##### o 홍보 강화

- 수출기업 CEO에게 인증신청을 당부하는 관세청장 명의서한 발송 (2010.7월 1차 10,000여개, 2010.9월 2차 7,700여개기업 대상)
- FTA 설명회, 간담회 개최(2010년 총100여회)
-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 주요 언론매체, 발표대회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로 수출기업들의 관심 제고

##### o 신속한 인증절차 지원

- FTA종합대책단(T/F, 45명) 및 세관 FTA 집행지원팀(58명) 설치(2010.7월)
- 상담인력 확대 지정 (2010.7월) 및 수출기업 방문컨설팅 지속 실시
- 원산지 사전검증 완료 기업의 인증절차 간소화
- 원산지 사전검증 요건 충족기업(하반기 9개 이상 검증 예정)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심사시 절차 축소

#### ② 한-EU FTA 「품목별 가(假)인증 제도」 도입 (2010.7월)

##### o 한-EU FTA 발효 전, 對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품목별 가인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 품목별 인증은 협정상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 FTA 발효 전에는 동 원산지기준이 효력을 갖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증심사 불가능

### ③ 인증수출자 지정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o 인증수출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요건을 보완<sup>\*</sup>하여 對기업 지원 강화
  - \* 관세법에 따른 처벌 등 원산지증명과 무관한 요건 삭제 및 입증대상 품목 축소
- o 세관의 원산지 사전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 심사 간소화 혜택<sup>\*</sup> 부여
  - \*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인증심사 절차를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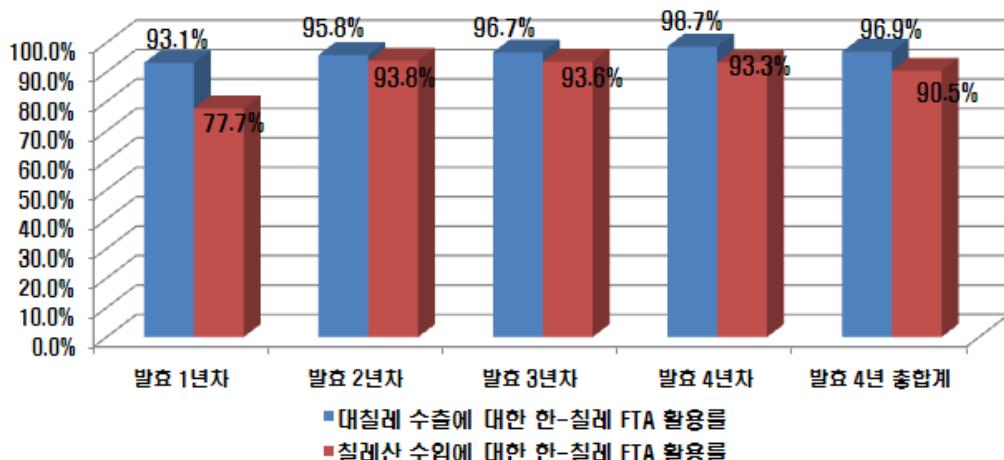
### ④ 인증수출자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부여

- o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 심사시 가점 부여
  - \* AEO는 전반적인 수출입 통관시 “검사 생략 및 담보제공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출입기업의 관심도 높음

□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FTA 발효 초기에는 활용률이 낮으나, 양국간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활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발효 1년차 93.1% ⇒ 발효4년차 98.7%)를 보이고 있음.

- o 한·EU FTA의 경우, 잠정발효 일자가 2011.7.1로 확정되면 한·EU FTA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더욱 제고되어 인증수출자 지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 한 · 칠레 FTA 활용률 동향 >



출처 :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 현황 및 시사점(2009, 김한성)

## V. 서비스

## 1. SSM

### (오해 내용)

- “한·EU FTA 발효시 상생법과 유통법은 무효화된다?”

### (사실 관계)

-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유통법과 상생법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으며, 추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패널의 판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봄.  
※ 한·EU FTA의 관련 양허는 WTO 서비스협정(1995.1.1 발효)의 우리 양허안을 반영하고 있어, 한·EU FTA 뿐만 아니라 WTO 양허에 관한 문제
- 정부는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의 어려운 상황을 그동안 EU측에 수시로 설명해 왔으며, EU측은 한국에 대한 주요 투자자로서의 불만은 있지만, 분쟁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앞으로는 SSM 법안이 유통분야에서 우리 중소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오해 내용)

- “한·EU FTA에서 WTO 양허에서 제외한 식품소매업 품목(유제품·계란, 육류, 빵, 사탕, 캔음료, 담배, 기타식품 등)을 개방함으로써 SSM 규제권한이 축소되었다?”

### (사실 관계)

- 우리나라는 1988.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소매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음. (1991.7월 10개 이하, 1,000m<sup>2</sup> 미만, 1993.7월 20개 이하, 1,000m<sup>2</sup> 미만)
- 2001년에는 담배, 골동품·예술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소매업종/품목(곡물, 고기, 과실, 일부 음식료업 등)을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면 개방하였음.

- 동 개방기조는 2003년 및 2005년 DDA 양허안에 반영되었으며, FTA 양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음.

#### (오해 내용)

- “한·EU FTA에서 한국과 EU 모두 WTO에서보다 제한을 추가한 사례가 있는 만큼 SSM에 대한 규제도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에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 (사실 관계)

- 우리나라가 한·EU FTA 양허안에 추가한 일부 소매유통분야(주류판매, 안경점, 약국 등)에서의 제한조치는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즉 허가 내지 자격사항에 해당되어 당초 WTO 양허표에 기재하지 않았음.
- 한·미 FTA에서 투명성 차원에서 국내규제 내용을 유보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한·EU FTA에서도 이를 명시한 것으로, WTO에서도 보장된 비차별적 국내규제 조치임.
  - ①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 금지: 미성년자의 주류구매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탈세방지 목적 (허가)
  - ② 안경사 면허 취득 및 사무소 개설 의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상 안경사 서비스의 질 유지 목적 (자격)
  - ③ 의약품 소매서비스 공급자(약사 및 한약사)의 약국 1개소 설치 및 회사형태 설립불가 의무: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약사법」 상 면허를 취득한 약사 및 한약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유지 목적 (자격)
- 한·EU FTA에서 EU측 「택시서비스」 및 「머리미용서비스(hair dressing service)」에 ENT(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이 있는 것은 ① WTO에서 이미 ENT 요건을 두었거나, ② WTO에서는 양허하지 않았던 분야를 FTA에서 새로 양허하면서 일부 회원국이 ENT 요건을 기재한 경우임.
  - ① 택시서비스: 당초 WTO에서부터 양허하되 ENT를 적용 (우리는 미양허)
  - ② 머리미용서비스: WTO에서는 오스트리아만 양허하고 나머지 회원국은 전혀 양허하지 않았다가, 한·EU FTA에서 모든 EU 회원국이 양허하면서 이태리만 ENT를 양허표에 기재

### (오해 내용)

- “한·EU FTA에서 쇼핑센터, 백화점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를 철폐하여 SSM 규제권한이 축소된다?”

### (사실 관계)

- 쇼핑센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와 SSM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도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정의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 우리나라는 1993.7월 3단계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점포수 및 매점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점포수 20개이하, 면적 3000m<sup>2</sup> 미만 허용)하였으며, 이어서 1996.1월에는 이러한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을 전면 철폐하였음.
- 더 나아가 쇼핑센터 및 백화점에 대한 경제적 수요심사를 1998년에 철폐하였음.
  - 이러한 규제 철폐가 WTO DDA 및 FTA 양허안에 반영된 것임.

### (오해 내용)

- “한·EU FTA 소매유통서비스 관련 EU 27개국 중 7개국은 ENT(경제적 수요심사) 제한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별도의 ENT 제한을 하지 못했다?”

### (사실 관계)

- 한·EU FTA에서 EU 27개국 중 7개국이 백화점에 대한 ENT 제한을 두었는 바, 이는 WTO GATS 양허부터의 백화점에 대한 ENT 제한이 유지된 것이며, 한·EU FTA에서 새로이 ENT 제한을 둔 것이 아님.
  - ※ WTO GATS 양허 (1994.4.15) : 5개국이 백화점에 대해 ENT 제한 부과
    - 벨기에(백화점), 덴마크(신규 백화점), 프랑스(대형 백화점), 이태리(신규 백화점/아울렛), 포르투갈: 대형 백화점(2,000m<sup>2</sup> 이상)
  - ※ 한·EU FTA : 7개국이 백화점에 대해 ENT 제한 부과
    -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이태리, 몰타, 포르투갈, 프랑스(대형 백화점)
      - 불가리아 : 2007.1 EU 가입, 몰타 : 2004.5 EU 가입

- 반면 우리나라는 WTO GATS 양허시 ‘백화점 및 쇼핑센터 개설 관련 외국인 투자금지’를 규정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별도의 ENT 제한은 두지 않음.

※ ‘백화점 및 쇼핑센터 개설 관련 외국인 투자금지’ 제한은 WTO DDA 양허안에서 삭제된 이후, 한·EU FTA를 포함하여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삭제

- 우리의 소매유통서비스 분야 WTO GATS 양허 상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서비스’에 대해서는 ENT 제한을 두었으며, 동 제한은 한·EU FTA에도 그대로 유지됨.

#### (오해 내용)

- “EU 7개국이 백화점에 대한 ENT 제한을 유지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EU 7개국에 대한 백화점 신규 진출은 불가능한 반면, EU 27개 회원국 기업은 우리나라에 백화점 신규 진출이 가능하다?”

#### (사실 관계)

- 한·EU FTA 상 EU 7개국이 백화점에 대한 ENT 제한을 두고 있으나, 2006.12월 제정된 EU 서비스지침\*에 따라, EU 27개 모든 회원국들은 수량제한 성격의 ENT를 할 수 없음.

- \* Directive 2006/123/EC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2006.12.12)
  - 금지요건(prohibited requirements)의 하나로 "경제심사(economic test)"를 포함하여 ‘기존 매장의 수 및 영향’ 등 양적 제한에 근거한 설립제한 금지
  - 단, 국내규제로 간주될 수 있는 "공중의 이익과 관련한 명백한 이유"로 하는 요건 부과는 가능

- 프랑스의 경우, 1996년 제정된 라파랭법에서 ‘상가의 수요/공급 관계’를 소매점포 신규설치 및 확장시 ENT 기준으로 포함하였으나, 2006년 EU 집행위가 동 법의 EU 서비스지침 위배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2008년 경제현대화(LME)법을 제정하면서, 수량제한 성격의 ENT 배제

	라파랭법(1996)	경제현대화법(2008)
심사대상	300㎡ 이상	1,000㎡ 이상 소매매장
심사기준	<b>상가의 수요/공급 관계</b> 중대형 매장의 상가설치 밀도, 다양한 상업 형태간 균형, 상업/수공업에 있어 경쟁여건, 환경개발, 도시개발에 미치는 효과, 상업 설비의 현대화, 소비형태와 상업화기술 적응, 소비자의 구매편리, 고용자의 작업조건 향상 등	① 지역균형발전(지역공동체의 활력 제고, 교통흐름 영향, 주거지역 개선효과 등)  ② 지속가능개발(환경적 영향, 대중 교통체계 편입 여부)

-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 27개 모든 회원국에 백화점 신규 진출시 한·EU FTA에 규정된 '기존 매장의 수 및 영향'이라는 ENT를 근거로 백화점 신규진출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EU 서비스지침에 규정된 국내 규제적 요건에 근거한 신규진출 규제만이 가능한 바, 이러한 국내 규제적 요건은 우리나라도 EU 기업이 우리나라에 신규로 백화점을 진출하고자 할 경우 원용 가능한 요건임.
- \* EU 서비스 지침 상 규제가능 사유 : “공중의 이익과 관련한 명백한 이유(overriding reasons relating to the public interest)”(EU 서비스 지침 제4조 제8항)
- 공공정책, 환경(도시환경 포함) 보호, 역사적·예술적 유산의 보전, 사회정책 목표 및 문화정책 목표 등

#### (오해 내용)

- “포르투갈의 경우, WTO GATS 양허보다 한·EU FTA에서 ENT의 대상이 되는 백화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WTO보다 한·EU FTA에서 개방수준이 후퇴했다?”

#### (사실 관계)

- 포르투갈이 WTO GATS 양허시 ‘2,000m<sup>2</sup> 이상의 백화점’을 ENT 대상으로 한 반면, 한·EU FTA에서는 ‘백화점(department store)’을 ENT 대상으로 한 것은 사실이나, 포르투갈의 WTO GATS 양허 의무 상 2,000m<sup>2</sup> 미만의 백화점에 대해 ENT를 적용하는 것은 GATS 위반임.
- 포르투갈이 WTO GATS 양허를 통해 ‘2,000m<sup>2</sup> 이상의 백화점’을 ENT 대상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의무임.
- 또한 포르투갈도 EU 서비스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2,000m<sup>2</sup> 이상의 백화점’을 ENT 대상으로 하더라도, 수량제한 성격의 ENT 요소를 근거로 하여 신규 백화점 진출을 규제할 수는 없음.
- 우리나라도 한·EU FTA 협정상의 양허 의무 준수와는 별도로 WTO GATS 양허 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 한·EU FTA 서비스 양허와 불합치 문제가 제기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관련 조항은 WTO GATS 서비스 양허와도 불합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참고****유통산업 개방정책 및 소매유통서비스 양허경과**

연도	구분	개방내용
1988.10	도소매진흥 5개년 계획	• 유통시장개방 '3단계 개방계획' 수립
1989.7	1단계 유통시장 개방	• 일부 투자 제한 업종(의약품 및 화장품 도매업) 해제
1991.7	2단계 유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투기업의 점포수, 매장면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수 : 10개 이하로 확대</li> <li>- 매장면적 : 1,000㎡ 미만의 점포 허용</li> </ul> </li> <li>• 51개 소매업종 중 36개(외의, 내의, 신발, 가방, 직물, 직물제품, 의복액세서리 등) 개방</li> </ul>
1993.7	3단계 유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투기업의 점포수, 매장면적을 점진적으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포수 : 20개 이하로 확대</li> <li>- 매장면적 : 3,000㎡ 미만의 점포 허용</li> </ul> </li> <li>•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제외 외국인 투자 개방</li> </ul>
1993.12	WTO GATS 최종양허안 제출	• 상기 3단계 유통시장 개방 수준 반영
1996.1	유통시장 전면개방	•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 완전 철폐
1997.4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1998	백화점 및 쇼핑센터 설립제한 철폐	• 백화점, 쇼핑센터 설립시 '경제적수요심사(ENT)' 제한 철폐
2001	업종제한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개 소매업종 추가개방(곡물·고기·과실·일부 음식료업 등)</li> <li>※ 담배, 골동품예술품 소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금지</li> </ul>
2003.3	DDA 1차 양허안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종 제한 철폐 반영</li> <li>• 백화점, 쇼핑센타 개방</li> </ul>
2005.6	DDA 1차 수정양허안 제출	• 1차 양허안과 동일
2007.6	한·미 FTA 서명	• 1차 수정 양허안 수준으로 개방. 쌀, 인삼, 홍삼 미래유보
2010.10	한·EU FTA 서명	• 1차 수정 양허안과 동일. 담배, 쌀, 홍삼 제외

## 2. 보험서비스 후선업무 허용/특별법상 최혜국대우 적용

### (오해 내용)

- “(한·EU FTA)협정은 발효 후 2년 안에, EU 보험회사들이 금융자료 서비스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 해외 이전을 통하여 EU의 본사에서 정보처리 및 후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7.43조)”

### (사실 관계)

- 보험업 관련 후선업무의 국내외 제3자 위탁이 이미 허용되고 있으며, 한·EU FTA로 인하여 새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님.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항:

- "... 외국 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국내외 본지점간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의 공급 계약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으로 간주한다."

- 아울러 정보처리의 경우, 금융정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전제로 2년 유예기간을 두고 허용할 예정임.

### (오해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만일 한국이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의료기관 등에 특혜를 부여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유럽도 혜택을 받도록 하였음”

### (사실 관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자구역법)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 일정 요건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자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경자구역법 제23조)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2조 등도 이와 유사함).

- 동 법의 취지상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사항은 국적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됨.
  - 따라서, 동 법률에 따른 사항은 특정 국가에 대한 별도의 특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 3. 신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

#### (오해 내용)

- “미국 금융 위기의 원인인 서브 프라임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추가적이며 선제적인 규제권한을 인정하지 않음”

#### (사실 관계)

- 한·EU FTA 상 신금융서비스는 한국(EU)에서는 허용·거래되고 있으나, 아직 EU(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함으로써, 국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함.(한·EU FTA 제7.42조)

#### 신금융서비스 허용 조건

- ① 당사국의 금융당국이 자국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당해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을 것
- ② 현행 금융법령이 허용하는 범위内일 것
- ③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회사가 상업적 주체의 형태일 것(즉, 인터넷 등의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는 불가능)
- ④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개개 상품별로 심사하여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인허가 제도 운영 가능(건전성조치를 이유로 인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조치는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한·EU FTA 제7.38조)

## 4. 금융 세이프가드

### (오해 내용)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금융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무엇이 ‘직접투자’인지에 대해서는 협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금융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한·EU FTA 제8.4조)
- 외국인 직접투자는 고용창출이나 선진경영기법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투자로서 우리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한·EU FTA 세이프가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적용 배제’ 조건은 이를 확인한 것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준은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에 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 (오해 내용)

- "...‘극히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하여 금융세이프가드를 추가 연장할 수 있어(제8장 주4), 그 의미 및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확인 필요..."
- "...6개월의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 FTA의 1년에 비해서도 불리하며 이를 6개월 연장하려면 동등한 상황이어야 한다고 제한함..."

### (사실 관계)

- 한·EU FTA 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란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했음에도 사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종료 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에서도 단기세이프가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금융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기간이 1년이나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의 경우에는 일단 발동기간을 6개월로 하되, 동등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필요시 일방이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 차이는 없음.

### (오해 내용)

- “외환세이프가드를 하더라도...(외국투자자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함(8.4조)”

### (사실 관계)

- 세이프가드는 경제위기시 일시적으로 외국환이 우리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서 외국투자자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내에서 원화자산에 투자해 시장수익률을 획득하는 활동(예: 은행예금, 주식시장 투자 등)까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아울러,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해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에도 포함되어 있는 조건임.

※ WTO 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불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개발과정이나 경제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그 나라의 경제개발 혹은 경제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 가. 회원국간에 차별되지 아니하며,
  - 나.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과 일치하며,
  - 다. 그 밖의 회원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 마. 일시적이어야 하며, 제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 5. 통신 서비스의 공익성 심사

### (오해 내용)

- "...한국의 해당 서비스 양허표에는 이러한 '공익성심사'라는 별도의 유보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음(협정문 p.316)...원칙적으로 공익성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됨"

### (사실 관계)

- 일반적으로 서비스공급 허가에 관한 공익성 심사는 양허표 기재사항이 아니라 국내규제 사항이므로, 공익성 심사는 양측 모두 양허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음.
  - 한-EU FTA에서도 공익성 심사를 국내규제 사항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양허표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에서 규율하면서, 공익성 심사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남용될 우려에 대비하여 '공익의 추정' 문구 등을 규정한 것임.  
※ 양해 해당 내용 : "...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당사자의 인에게 공중 통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허가의 부여에 대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따라서, 양측의 통신규제기관이 공익성심사를 통해 신청대상 허가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 규제기관이 국가안보와 같은 공익의 위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경우, 허가거부의 정당한 증거와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여 공익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
- 간접투자 100% 허용은 우리나라 유·무선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통신사업자(투자비중 기준 약 25.5%)로 한정되며, 이를 통해 통신망 투자 및 기술혁신을 동반한 장기투자형 외국인 지분증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공익에 부합하는 대부분의 외국인투자를 공익성 심사를 통해 거부할 이유가 없음.

## 6. 우편서비스(우편법 관련 조항)

### (오해 내용)

- “한국은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협정문 p.390)에서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우편법과 관련 법률’개정을 약속함”
- “비록 이 양해가 비구속적이라는 주석이 있으나(주1),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인 입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부 대표가 이를 외국 대표에게 서면 약속하는 것은 헌법 위반임”

### (사실 관계)

- 현행 우편법상 신서의 범위는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또는 하위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양해한 것이고, 각주에 명시되어 있듯이 동 양해는 비구속적이며 분쟁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
- 한·EU FTA의 발효는 국회의 비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 양해를 포함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음.
- 일부에서 제기한 “...한국은 실제로 2010.9.1 이 조항을 개정하여 국내 본지점 서류의 특급 송달도 우체국의 서신 독점 영역에서 제외하였음”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2010.9.1 개정 사항은 우편법시행령 제3조5항의 “국내에서 회사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을 “국내에서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사실상 차이가 없음.

## 개정 내용 비교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16호, 2007.4.20. 일부개정]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67호, 2010.9.1. 일부개정]
<p><b>제3조 (신서송달의 예외)</b>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2.6.30, 2007.4.2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li><li>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li><li>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li><li>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li><li>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li></ol>	<p><b>제3조(신서송달의 예외)</b>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2.6.30, 2007.4.20, 2010.9.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li><li>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li><li>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li><li>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li><li>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li></ol>

### (오해 내용)

-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우체국만이 할 수 있는 신서를 민간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외국과 수발하는.. 서류”로 한정하였으나, 서비스 양허표에서 EU에게 약속한 것에는 “외국과 수발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지 않았음

### (사실 관계)

□ 한·EU FTA상의 우리 서비스 양허표는 우편법상 대한민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신서(信書)의 수집, 처리 및 배달서비스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주16은 우정당국의 이러한 신서독점권에 대한 예외 범위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투명성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음.

○ 해당 각주는 동 조항의 예외사항을 예시적으로 설명(which include ...)하고 있는 바, 구체적 예외 범위는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당연히 외국과 수발하는 신서와 매우 제한적 범위의 국내서류만 해당되므로, 동 각주 때문에 우리의 개방범위가 국내 신서송달까지 넓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협정문 영문도 오류라는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음.

\* 영문 표현도 의무와 관련되는 “Article 3 .... shall allow”가 아니라, 현재 상태를 말하는 “Article 3 ... allows”를 사용

- 또한, 한·EU FTA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는 우리 정부의 우편개혁 계획을 담은 양해에서도 우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모든 국제서류” 특급배달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리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확대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이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서송달의 예외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경우에도 “국제서류” 송달만 그 대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 개정 이전의 현재의 허용범위가 기본적으로 “국내서류”가 아닌 “국제서류” 송달에 국한된다는 것이 분명하며, 협상과정에서 EU측도 그렇게 이해하였음.

우편법 시행령 제3조 (신서송달의 예외)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 각주16
<p>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li> <li>2. <u>외국과 수발하는</u> 수출입에 관한 서류</li> <li>3. <u>외국과 수발하는</u>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li> <li>4. <u>외국과 수발하는</u>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li> <li>5.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li> </ol>	<p>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p>

## 7.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관련

### (오해 내용)

-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에서 서비스·설립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법률에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빠져 있음"

### (사실 관계)

- 한·EU FTA의 "용도지역지구제·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는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포함하여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규제는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일부 관련 법률을 예시하였음.
  - ※ 등 양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를 예시
- 또한, 양 당사자가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하였음.
- 이에 따라, 동 양해에 해당 법률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시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비차별적이며 비수량적인 규제는 유지 및 신규 도입도 가능함.

## 8. 서비스 양허표의 자기집행력

### (오해 내용)

- "...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헌법에 의하여 한·EU FTA는 법률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자기 집행력과 직접효가 없는 법률은 한국 국내법에서는 존재 할 수 없음"

### (사실 관계)

- 조약이 국내법 체계상 어떠한 지위를 갖는지 여부와 해당 조약 규정이 자기 집행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조약 규정에 자기집행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조약 체결 당사국의 의사 해석의 문제인 바, 조약 체결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자기집행력이 없음을 규정할 수 있음.
- 한·EU FTA의 우리나라 및 EU측 서비스·설립 양허표의 관련 규정은 동 양허표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가 자기 집행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직접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을 양측이 명확히 한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 **VI. 지적재산권**

# 1. 방송사업자의 권리

## (오해 내용)

- “한·EU FTA는 방송사업자에게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 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동 조항에 따라 상업적 공공 시청 이벤트(commercial public view event)와 관련한 간접적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도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가 행사될 우려가 있다?”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입장료를 받고 공중이 입장하는 장소에서 TV 방송물이 공중에 전달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물의 공중전달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한·EU FTA 제10.9조 제5항 다호)
  - 동 규정은 방송 시청에 대한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방송사업자의 이러한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은 국내법에 따르도록 허용하고 있어, 국내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 한·EU FTA 제10.9조 5항 다호 : 각 당사자는 다음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다.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공중에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공중전달. 이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이 권리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 사안이다.
  -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EU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방송사업자는 ... 그 공연의 시청에 대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의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제85조의2)하고 있어, ‘간접적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아울러, 사실상 방송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영업 형태는 국내에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 지재권 국경조치

### (오해 내용)

- “한·EU FTA를 통해 특허, 지리적표시까지 국경조치 대상으로 확대하고, 직권조치도 가능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법적 판단을 요하는 특허권 침해를 세관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무리하다?”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세관당국이 특허권 등 지재권의 위반을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재권자가 통관보류 또는 유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물품을 통관 보류 또는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EU FTA 제10.67조)
  - ※ 한·EU FTA 제10.67조 2항 : 양 당사자는 세관당국이, 자신의 조치과정에서 그리고 권리자에 의해 신청이 제출되거나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상품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때, 권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상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직원교육 및 전문가 육성,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 특허권 국경조치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협정상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준비기간을 확보하였음 (한·EU FTA 제10.67조 4항).
- 한편, 세관에 의한 특허권 국경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음.

### 3. 지재권 형사집행

#### (오해 내용)

-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료나 도구를 폐기해야 하는가? 대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리기 위해 학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학교 컴퓨터를 폐기해야 하는가?”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침해 행위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재료나 도구를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상표제품이나 불법복제물의 생성에 주로 사용된 재료나 도구를 몰수·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한 조치임. (한·EU FTA 제10.60조)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검찰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 제720호)

제28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공매에 의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아울러, 한·EU FTA는 제3자의 권리(제3자)를 정당하게 보호·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재료나 도구가 압수·몰수·폐기될지의 여부는 사법당국이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한·EU FTA 제10.61조)

- o 따라서, 대학생이 인터넷 카페에 무단으로 음악을 올리기 위해 학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한 경우, 학교 컴퓨터를 폐기할지 여부는 제3자인 학교의 권리를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 형법은 범죄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경우는 몰수·폐기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한·EU FTA 제10.61조 : 각 당사자는 제3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고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 (오해 내용)

- o “침해자가 아닌 소송의 피고 또는 증인인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 정보제공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것은 아닌지?”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정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적 범위에 침해자 외에 소송의 당사자와 증인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현행법과 다르지 않음.(한·EU FTA 제 10.45조)
-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도 법원은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피고 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 절차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함.

#### ※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20조(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오해 내용)

- “침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중개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하여, 프랑스 샹파뉴 지방을 원산지로 하지 않은 발포성 포도주의 포장에 “샴페인 류의 포도주”가 표기된 상품을 배달하는 택배회사를 상대로 한 배달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

### (사실 관계)

- 현행법상으로도 지재권을 침해한 물건의 운송 등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가처분이 배제되어 있지 아니함.

※ 한·EU FTA 제10.46조 1항 : ... 중간금지명령은 제3자에 의하여 중개자의 서비스가 사용되어 저작권, 저작인접권,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그 중개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다.

- 각주 20) 이 항의 목적상, “중개자”的 범위는 각 당사자의 법령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침해상품을 배달하거나 배포하는 인,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한다.

※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 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 ②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금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4. 저작권 보호기간/허가-특허 연계

### (오해 내용)

- “한·미 FTA는 저작권과 실연·음반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EU FTA는 방송을 제외한 실연·음반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국내법이 개정되면, EU의 실연·음반에 대해서도 7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사실 관계)

-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는 저작권(제10.6조)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만 “저작권자 생전+사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EU 지침(DIRECTIVE 2006/116/EC)이 실연과 음반을 최초로 합법적으로 공표한 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임.

#### <저작권 보호기간 비교>

	한·미 FTA	한·EU FTA
보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저작권: 70년(자연인·법인)</li><li>저작인접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연 및 음반: 70년</li><li>- 방송: 규정 없음.</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저작권: 70년(자연인의 경우만)</li><li>저작인접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실연 및 음반: 규정 없음.</li><li>- 방송: 첫 방영 후 50년</li></ul></li></ul>

-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한 점을 감안, 2008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내국민 대우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여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 저작권법 개정안 제3조 제4항(신설) : 제1항(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과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기간만큼 보호기간을 인정
- \* 로마협약 제2조(내국민대우) 제2항 : 내국민대우는 이 협약이 특별히 보장하는 보호 및 특별히 정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로마협약 제14조(최소 보호기간) :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보호의 기간은 다음의 연도 말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20년의 기간 말까지 존속한다.
  - 가. 음반 및 음반에 수록된 실연에 대하여는 고정이 이루어진 해
  - 나. 음반에 수록되지 않은 실연에 대하여는 실연이 행하여진 해
  - 다. 방송물에 대하여는 방송이 이루어진 해

- 따라서 한·미 FTA에 따라 실연·음반에 대한 보호기간이 70년으로 연장될 경우, EU의 실연·음반에 대해서도 7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오해 내용)

- “한·EU FTA에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의 예외를 명시했어야 했다?”

#### (사실 관계)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 분야에서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

- 한·미 FTA에 포함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미 FTA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 특허존속 기간동안 복제약 시판허가 신청시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둑인없이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허가 절차에서 취하는 제도

- 한·EU FTA와는 별개로, WTO 회원국은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상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라 지적재산권(특허 포함)과 관련한 국내조치를 WTO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한·미 FTA 발효시 허가·특허 연계에서 한국에 특허 등록한 미국 기업에만 동 제도를 적용하고 한국에 특허 등록한 여타 외국 기업에 대해서 동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WTO TRIPS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 ※ 관련 WTO TRIPS 협정

- 제3조 내국민대우: 각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 베른협약(1971년), 로마협약 또는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이 각각 이미 규정하고 있는 예외의 조건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Re.3)에 관하여 자기나라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략)
- 제4조 최혜국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 일방 회원국에 의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후략)

## 5. 지리적 표시

### (오해 내용)

- “유럽연합의 162개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 WTO 협정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지리적 표시 추가 요청에 대해 과도한 자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과잉보호가 아닌가?”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EU의 지리적 표시 162개와 함께 우리의 지리적 표시 64개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음.
  - ※ EU·칠레 FTA에서는 EU GI 약 8,300개(협정문 200쪽 분량), 칠레 GI 60개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
- 농산물 및 가공품(농식품)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을 WTO TRIPS 협정상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으나, 선행상표의 계속 사용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업계의 피해는 거의 없음.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돈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한·EU FTA는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추가는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리적 표시 작업반(GI Working Group)에서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EU측이 추가 요구를 한다고 하여 우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한·EU FTA 제10.24조, 제10.25조)

### 한-EU FTA 제10.24조 및 제10.25조 주요 내용

#### 제 10.24 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 표시의 추가)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 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생략)

#### 제 10.25 조 (지리적 표시 작업반)

1. (전략)…작업반은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거나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생략)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 가. 적용 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 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별 지리적 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 나. 원산지 당사자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 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하는 것…(이하생략)

#### (오해 내용)

- “EU의 포도주와 증류주 중“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Pacharan”등 그 생산이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는 제품의 명칭을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 (사실 관계)

-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상품은 그 생산이 특정 지역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음.
- 한-EU FTA 제10.18조제6항나호상,“(…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임을 규정하고 있음.

- WTO TRIPS 협정에서도 지리적 표시를 “(…) indications which identify a good as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a Member, or a region or locality in that territory (…)”로 정의함(TRIPS 협정 제22.1조).
- 우리 역시 ‘고려홍삼’, ‘고려백삼’ 등 대상지역을 국내 전역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를 한·EU FTA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음.

#### (오해 내용)

-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과 같이 보통명사인 ‘제품’까지 포함된 단어를 보호되는 명칭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EU의 지리적 표시에 비해 우리 권리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 (사실 관계)

- ‘고려인삼제품’과 ‘고려홍삼제품’에 “제품”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EU FTA에는 이와 별도로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및 ‘고려수삼’으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도 규정되어 있음.
- 우리 농산물품질관리법상 ‘고려홍삼’, ‘고려백삼’ 및 ‘고려태극삼’은 2006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고, ‘고려수삼’은 2007년 등록되었으며, ‘고려인삼제품’과 ‘고려홍삼제품’은 2008년에 등록된 바 있음.

#### (오해 내용)

- “지리적 표시 부속서상에는 한·EU FTA 서명일(2010.10.6) 이전에 국내적으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 18개와 임산물 12개(안동포, 한산모시, 보성삼베, 영월고추, 영천포도, 영주사과, 함평한우, 김천자두, 예산사과 등)가 누락되었는데, 이는 협상시의 잘못이 아닌가?”

#### (사실 관계)

- 한·EU FTA상 지리적 표시의 보호 범위는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에 한정되어, 안동포, 한산모시, 보성삼베 등 가공물은 포함되지 않았음.

- 2008.12월 개최된 확대수석대표회담에서 지리적 표시 분야 협상이 대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 후 국내법상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농산물 및 임산물은 협상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나, 관련규정 (한·EU FTA 제10.24조 및 제10.25조)을 통해 양국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추가할 가능성은 열려 있음.

※ 관련 지리적 표시의 농산물품질관리법상 등록일자

- 농산물: 영월고추(08.12.19), 영천포도(09.1.22), 영주사과(09.1.22), 함평한우(09.9.14), 김천자두(09.12.17), 예산사과(10.3.25)  
(홍천한우(08.10.16)까지는 협상에 포함)
- 임산물: 영암대봉감(08.11.25), 천안호두(08.12.23), 문경오미자(09.1.28), 정선곤드레(10.4.5)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08.8.13)까지는 협상에 포함)

※ 11.4.5 민변측 기자회견 자료는 ‘영암대봉감’과 ‘정선곤드레’의 등록일자를 각기 08.12.12일과 10.7.22일로 표기하였으나, 두 지리적 표시는 각기 08.11.25일과 10.4.5일 등록되었으므로 오류이며, ‘정선곤드레나물’의 등록 명칭 또한 ‘정선곤드레’가 맞음.

## **VII. 정부조달/경장**

# 1. 서울, 인천, 경기 건설 활성화 조례

## (오해 내용)

- “2011년 1월, 인천시 의회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지역 건설사 참여 공동도급과 하도급률 권장치를 명시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
- “이러한 제도는 모두 인천, 경기, 서울에 등록한 모든 건설회사를 위한 것으로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EU FTA가 발효 되면, 유럽의 건설사는 이와 같은 제약에 도전할 것으로 보임.”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양허대상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고 추정가격이 284억 원(1,500만 SDR, 1SDR=1890.16원) 이상의 공사에만 비차별 대우의무를 부과하므로, 추정가격이 284억 원 미만의 공사에서 시행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한·EU FTA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
  -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이 284억 원(1,500만 SDR) 미만인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 추정가격이 284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4880호)와 같이 시장이 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 또는 공동 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적인 의무도급제가 아니므로,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음.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인천광역시 조례 제4880호(2011.1.10 개정) 제8조-**

-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오해 내용)**

- “이미 폐지된 의무하도급제를 EU가 2010년에 ‘현행 하도급 요건’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검증 필요”

**(사실 관계)**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언급한 “건설업에서의 현행 (existing) 하도급 요건”은 2008년 1월 1일 폐지된 의무 하도급제도를 의미함.
  - 협상 초기에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2004.12.31)에 따라 3년간 유예후 폐지키로 되어있었던 의무하도급제도도 양허안에 포함시켜 EU측의 양허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동 제도가 당초 예정대로 2008.1.1 폐지됨에 따라 최종 양허안에서는 삭제하였음.
  - EU측 발표자료는 동 제도의 계획된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폐지된 것도 성과로 간주하여 국내 홍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의무 하도급제도(2004.12.3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008.1.1 폐지) : 일반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일정비율(20억이상 공사의 20%, 30억원이상 공사의 30%) 이상 반드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야 하는 제도

## 2. 친환경 학교 급식

### (오해 내용)

- “한·미 FTA와 달리 한·EU FTA에는 학교급식 예외규정이 없어 국내산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것이다”

### (사실 관계)

-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와 EU 양측이 상호 양해한 입장에 비추어, 우리의 급식제도에 대해 향후 EU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음.
  - 한·EU 양측은 FTA 협상 당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 FTA 정부조달 양허표를 별도로 협상하여 첨부하지 않고, WTO GPA 개정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키로 합의하였음.
    - ※ WTO 정부조달협정(GPA)은 WTO 복수국간 협정으로, 현재 우리와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41개 회원국이 가입중
  - EU측은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WTO GPA 개정협상에서 제출한 양허안(2006.1월)을 인지하고, 동 개정 GPA 양허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학교급식 예외조항에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개정 GPA 발효시 한·EU FTA에도 그대로 포함된다는 점을 양해함.
    - ※ 한·EU FTA 제9.2조제1항 :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달은 그 개정 또는 대체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속서 및 그에 따른 주석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조달이다.
- 정부는 WTO GPA 개정협상에서, 2005년 전후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면서, 개정협상 양허안에 학교 등에서의 급식(human feeding programme) 예외조항을 제안함.
  - 급식 조달(human feeding programme)에 대한 예외 조항은 EU, 미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GPA 회원국들도 양허표에 포함하고 있어, 우리의 예외조항 제안에 대해 EU를 포함한 여타국들로부터 전혀 이의 제기가 없음.
- 참고로, 한·미 FTA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그 결과로서 양허표를 협정문에 수록하였고, 동 양허표상의 급식(human feeding) 예외조항도 함께 포함됨.

### 3. 보조금 산업 정책

#### (오해 내용)

- “한·EU FTA 제 11.12조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에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과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보조금의 총액, 유형, 분야를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WTO보조금 협정 제25조(통보)에서 회원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유사함.(한·EU FTA 제11.12조)
  - ※ WTO 보조금 제 25조(통보) 제3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할 것을 규정 :
    - (i)보조금의 유형
    - (ii)연례 보조금 총액
    - (iii) 보조금의 목적
    - (iv)보조금 지급 기간
    - (v) 보조금의 무역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
- 한·EU FTA에서 추가된 수령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가능한 경우 (where possible)”로만 제한하였으므로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없으며, 동 조항은 EU측에도 상호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리에 대한 일방적인 정보 제공 의무는 아님.

#### (오해 내용)

- “WTO 보조금에서는 “조치가능 보조금”으로 분류된 기업지원 보조금을 한·EU FTA에서는 “금지보조금”으로 분류하여 EU는 산업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없이 바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한·EU FTA 협정문이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여, 지자체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 (사실 관계)

- 한·EU FTA는 WTO 보조금 협정상의 금지보조금(수출보조금, 수입대체 보조금)에 추가하여, 아래 2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양 당사자의 국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금지 보조금으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음.(제11.11조)
  - ① 기간 또는 양적인 측면에서 무제한적인 보증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 ② 신뢰할 만한 구조조정 계획없이 상당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 부실 기업에 대한 지원

- 그러나, 중소기업 보조금, 전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은 상기 2항에 해당되기 어려우며, 더구나 양 당사자의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EU FTA 상금지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특히, 한·EU FTA는 일시적 유동성 지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보상, 농수산 보조금, 서비스보조금, 그리고 WTO 보조금협정 상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중소기업보조금은 상기 금지보조금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금지보조금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11.11조 및 제11.15조) 